

##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도조정위원회”를 “도정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결정사항) 도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

1.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
2.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
3.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
4. 공무원 국외훈련 심사
5.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·발전에 관한 사항
6. 각종 가격 및 요금의 조정
7. 품질관리의 정착을 위한 시책의 연구·발전에 관한 사항
8.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9. 불우이웃돕기금고 운용에 관한 사항
10. 근로청소년 장학생 심사 등에 관한 사항
11.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에 관한 사항
12.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설치 운용하도록 한 위원회중 다음 사항
  - 가.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
  - 나.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
  - 다.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 심사
  - 라.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
  - 마.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
  - 바.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
  - 사.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구호 협의
  - 아.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사업 등의 심의
  - 자.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심의
13. 기타 도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사무관이 되며,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.

별표(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)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규칙 · 규정) 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(규칙 제1951호, '93.7.9)  
및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운영규정(훈령 제964호, '95.7.7)은  
이를 폐지한다.